#### 1. 개정이유

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국내 거주기간(6개월)을 규정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('24.4.3.시행)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자격취득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인용 규정 정비(안 제4조제3항, 제5조제2항제9호, 제5조의2제1항)

나. 신생아의 범위를 규정하고,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준일 정비(안 제5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 조의3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4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•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예고(2024. 5. 2. ~ 5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3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5월 8일 보거복지부장과

# 「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」 일부개정안

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"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"를 "규칙 제61조의2제1항 제4호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"제3호"를 "제6호"로 한다.

1. 직장가입자의 자녀(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)인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: 출생한 날(국내에서 태어나고 그

출생일에 앞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)

- 2.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: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(제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되는 날의 다음 날. 다만,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(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.
- 3.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인 외국인이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: 입학한 날.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.
- 5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: 그 요건을 충족한 날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조제3항제1호"를 "제5조제3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해서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했 제4조(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・상 제4조(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・상 실 시기 등) ① (생 략) 실 시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③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 ③ -- 제61조의2제1항제4호----의 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④~⑤(생략) ④ ~ ⑤ (현행과 같음) 제5조(피부양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제5조(피부양자 자격의 취득·상실 시기 등)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 시기 등) ① -----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 의 자격을 얻는다. 1.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1. 직장가입자의 자녀(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)인 「모자보 건법 1 제2조제4호에 따른 신 생아의 경우: 출생한 날(국내에 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 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) 2.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의 주 2. 영 제76조의3제1항제2호나목

민등록,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 국인등록(이하 "주민등록등"이 라 한다)을 한 날부터 90일 이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 청한 경우: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. 다만,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 자의 자격 취득일로 한다.

3.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 3.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 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 득을 신청한 경우: 그 자격취 득을 신청한 날. 다만, 주민등 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 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의 자격취득일로 한다.

가.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

나. 천재지변, 질병,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 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 <u>또는 제3호나</u>목에 해당하는 경 우: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(제4 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되는 날의 다음 날. 다만,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(해 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.

는 재외동포(F-4)인 외국인이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 여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 월이 지나기 전에 제4조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게 된 경 우: 입학한 날. 이 경우 제4조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 한 한다.

#### 여 신청한 경우

4. (생략)

<신 설>

-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 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- 1. ~ 8. (생략)
- 9.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(재 외국민 또는 <u>제3호</u>의 체류기간 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### ③ (생략)

제5조의2(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저의 제출)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

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공단이
정하는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
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게
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
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
경우: 그 요건을 충족한 날
②
1. ~ 8. (현행과 같음)
9
<u>মা6ত</u>
③ (현행과 같음)
세5조의2(외국 가족관계 확인서튜
의 제출) ①

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 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·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② (생 략)

 <u>제5소제3항</u> 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